

# 과업내용서

【2015년 관내 하수도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(연간단가)】

강남구청  
안전교통국 치수과

# 과업내용서

## I. 과업개요

1. 과업명 : 2015년 관내 하수도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(연간단가)
2. 대상위치 : 강남구 중간적치장
3. 목적 : 본 용역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준설공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도준설토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처리를 목적으로 한다.
4. 용역기간 : 착수일 ~ 2015. 12. 31.
5. 용역내용 :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준설토 폐기물 위탁처리

## II. 일반사항

1. 착수계 및 기타서류
  - 1)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과업내용별 수행 계획표, 대리인계, 용역수행자 명단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설계변경 조건
  - 1)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(추가용역 발주 포함)
  - 2) 수집·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“발주기관”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
  - 3) 입찰결과 운반거리가 50km미만의 업체가 선정 시는 실거리로 정산하고, 운반거리가 50km 이상의 업체가 선정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내역서상의 운반거리를 준용한다.
  - 4)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
3. 용역이행조건
  - 1) 발주자 또는 시설용역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

야 한다.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용역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. 단, 특별한 사유(천재지변, 불가항력, 사회 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정 등)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- 2) 폐기물량 정산 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물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한다.
- 3)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.

### III. 과업의 내용

#### 1. 기본지침

- 1) 본 과업 내용서에서 서울시 강남구를 “발주기관”이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“계약상대자”이라 한다.
- 2) 본 과업은 “발주기관”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·감독하에 수행한다.
- 3) “계약상대자”은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.
- 4)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이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“발주기관”의 해석에 따른다.
- 5) “계약상대자”은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“발주기관”의 지시사항 불이행·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#### 2. 세부업무수행 지침

- 1) “계약상대자”은 용역 착공 전에 수집, 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하수준설토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 
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준설토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한다.
- 3)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.
- 4) 폐기물 반출 시는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반드시 감독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·소에 관계없이 요청시 즉시(12시간 이내)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감독관

의 승인하에 24시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.

- 6) 계약상대자는 준설토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7)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8) 폐기물 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9)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,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10) “계약상대자”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반출량 확인을 위하여 “발주기관”의 표본계량 요구 시 공인계량소에서 표본 계량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11) 폐기물처리업자 책무, 처리방법, 준수사항
  - 가) 폐기물 운반업자
    - 하수준설토를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.
    - 하수준설토의 운반, 보관 중 준설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.
  - 나) 폐기물 중간처리업자
    -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.
  - 다)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
    -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  - 폐기물은 그 운반·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·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.
    -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    - 폐기물은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

한다.

-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12)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관련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.